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마련>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17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1. 제안이유 ····· 1

2. 주요내용 ····· 2

Ⅲ. 검토의견 ····· 4

1. 총괄 검토 ····· 4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 4

(2) 제정안의 개관 ····· 13

2. 주요 조문별 검토 ····· 14

(1) 법률의 목적 및 정의 규정 등 ····· 14

(2)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등 ····· 19

(3) 인력·기술·창업·시설·판로·금융지원 등 ····· 23

(4) 보칙 ····· 29

※ 참고자료

1. 소공인 현황 ····· 31

2. 패션·봉제업종 소공인 현황 ····· 34

3. 의류제조업 현황 ····· 36

4. 패션·봉제산업 위기 관련 통계 ····· 39

5. 중소벤처기업부 패션·봉제업종 소공인 지원 현황 ····· 41

6. 중소벤처기업부 ’26년 소공인 지원 계획 ····· 43

7. 산업통상부 의류제조업(봉제업종) 지원사업 내용 ····· 45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남근의원 등 27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4.

3. 회부연월일 : 2026. 1. 1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패션봉제산업은 섬유산업의 핵심 후방 산업이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고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과거 국가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또한, 도심 제조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도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봉제산업은 동대문시장의 침체와 중국향 물량 감소,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며 쇠퇴하고 있음. 인력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 영세한 사업체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투자 여력 부족, 그리고 인터넷 쇼핑 등의 발달로 인한 집적이익 경쟁력 상실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 이러한 봉제산업의 쇠퇴는 도시 내 전반적인 중·소 제조업의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현행 제도는 패션봉제산업의 특수성과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책이 미비하며 종합적 지원도 전무함. 이로 인해 인력 기반 재건과 집적지 유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 대응이 부족하므로, 특별법 제정으로 이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패션봉제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패션봉제, 패션봉제산업, 패션봉제사업자, 패션봉제사업체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패션봉제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를 의무화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패션봉제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현황 관리를 위해 패션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금융·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전수, 창업, 시설·유통 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패션봉제산업은 섬유·패션산업[1]의 가치 사슬에서 실제 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후방 산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2]을 담당하여 온 고숙련 노동 집약적 분야이며, 도심 내 소규모 작업장 중심으로 형성되어 도심 제조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도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동 산업은 2000년대 이후 중국·베트남 등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후발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대규모 생산 기반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일감 부족 등 국내 생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3]되었으며, 봉제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인력 유입의 단절로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4]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의류제조업 실태조사’[5]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의류제조

1) 섬유·패션산업은 업스트림(섬유원료/섬유사)부터 미들스트림(직물 및 염색/가공 등), 다운스트림(봉제/의류)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장이 세분화되어 있는 구조를 보임

2) 섬유패션산업은 60년대부터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며 ‘87년 국내 업종 최초 100억불 수출 달성 하였으며, ’70년대에는 전체 대비 수출 54%(‘71), 제조업 중 생산 22%(’73), 고용 36%(‘77), 업체수 27%(‘77) 담당하였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2019. 6. 26.)

3) 한국산업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섬유패션산업의 직무별 고용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자료 2025. 12., 27p

4) 이정민,“고사위기 ‘K패션 뿌리’…‘서울 봉제업 5년뒤 붕괴’“,「문화일보」,2025. 6. 12., https://www.munhwa.com/article/11511650

업체는 23,507개사로 국내 제조업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81.3%(19,110개사)로 소규모 사업체 비율[6]이 높았으며, 매출액 1억원 미만 사업체가 60.3%(14,174개)로 영세한 소공인 비율이 높았음. 동 업종의 인력 현황을 보면, 30대 미만은 4.8%에 불과한 반면 50대 이상은 82%에 달해 전반적으로 인력 구조의 고령화[7]를 보이고 있음.

또한 의류제조업체에서 가장 종사자가 많은 봉제사[8]를 기준으로 하면, 숙련공의 월 평균 임금은 263.2만원으로 제조업 월 평균 임금 475.5만원[9]에 비해 처우가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평균 거래처 수는 4.8개이지만 1대 거래처의 매출비중이 71.1%를 차지해 취약한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음. 이외 전년 대비 매출 감소가 62.9%로 과반을 상회하였고 향후 2년간 사업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23.3%가 규모 축소 또는 사업철수 및 전환 등을 계획하고 있음.

이러한 패션봉제산업의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 의류 제조 기반 약화로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고 패션 산업 전반

5)통계청 고시 제2025-695호(2025. 9. 11.)에 따라 기존 봉제업체 실태조사의 명칭이 의류제조업 실태조사로 변경되었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통계명칭	ㅇ봉제업체 실태조사	ㅇ의류제조업 실태조사	-한국표준산업분류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과 관련된 모든 산업(한복 제조업 제외)이 조사대상으로 "의류제조업"으로 명칭 변경

6) 종사자 규모별 현황: 5인 미만 81.3%(19,110개), 5~9인 11.2%(2,622개), 10인 이상 7.5%(1,774개)

7) 종사자 연령 분포: 30대 이하 4.8%(4,280명), 40대 13.2%(11,834명), 50대 35.4%(31,633명), 60대 이상 46.6%(41,590명)

8) 의류제조업체 전체 종사자(89,337명) 중 봉제사는 37,581명으로 42.1%를 차지함.

9) 고용노동부 2024년 월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음.

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10]되고 있음.

한편, 현재 패션봉제산업 관련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패션봉제산업에 속하는 소공인을 포함한 소공인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는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패션봉제업종 관련 지원사업 및 예산 현황(25년 기준)

지원기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내용
중소벤처 기업부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지역소공인 육성, 판로개척지원, 클린제조환경조성, 스마트제조지원)	5,646백만원 (의류봉제 소공인 지원예산 금액)	ㅇ지역소공인 육성 (의류봉제 소공인 대상 특화·복합센터 운영(16곳)) ㅇ판로개척 지원 (의류봉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ㅇ클린제조환경조성 (작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 효율화 등 작업환경재선 지원) ㅇ스마트제조지원 (의류봉제 소공인 작업장의 자동화 기기 및 스마트 장비 도입 지원)
산업통상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 기반마련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 구축)	6,450백만원 (의류제조업 중 봉제산업 지원예산 금액)	ㅇ의류제조 혁신기반조성 (의류개발실, 자동재단실 등 의류생산관리지원, 의류제조업 실태조사) ㅇ섬유패션 수요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의류제조 인력양성) ㅇK-섬유패션 협력강화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 (의류디자인·소재·제조 밸류체인간 협력을 통한 봉제산업 육성) ㅇ패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구축 (크리에이터의 창작 컨텐츠와 봉제산업 협업 플랫폼 구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10) 이유민,“잘나가는 K-패션 뒤 침몰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해법은?“,「패션비즈」,2026. 4. 13., https://fashionbiz.co.kr/article/225344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은 도시형 소공인 전반에 대한 공통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어 패션봉제산업이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지속성도 부족한 면이 있음. 또한 산업통상부의 지원 사업은 섬유패션산업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어 소규모 시설 지원 및 인력 양성 등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구조적 쇠퇴에 직면한 패션봉제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심 제조업의 핵심이자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패션봉제산업의 붕괴를 막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써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소공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제정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패션봉제업종 다수가 소공인법 등 기존 제도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바, 패션봉제산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지원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제조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3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체[11]는 총 54.5만개로 전체 제조업(61.6만개)의 88.5%를 차지하는데, 이중 패션봉제업 소공인은 30,517개사로 전체 소공인의 5.6%, 종사자수는 4.5%(5.6만명), 매출액은 3.9%(8.5조원)를 차지하고 있음.

패션·봉제업종 소공인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

구분	업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중
기업체	C.제조업	510,401	519,083	551,049	562,672	545,963	100.0
	의류봉제(C14)	28,332	29,599	31,408	31,830	30,517	5.6
종사자수	C.제조업	1,272,792	1,258,020	1,283,380	1,284,042	1,233,705	100.0
	의류봉제(C14)	61,467	60,730	60,390	59,727	56,067	4.5
매출액	C.제조업	1,935,536	1,825,444	2,089,853	2,267,053	2,195,331	100.0
	의류봉제(C14)	82,265	69,854	79,857	90,552	85,434	3.9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을 통칭하는 산업

**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

패션봉제산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에 속하는 25개 중분류 항목 중 하나이자 섬유패션산업 가치사슬에서 최종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바, 노동집약적 특성 및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타 업종[12]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11) 업종별로는 금속가공(81,150개, 14..9%), 식료품(67,632개, 12.4%), 기타기계장비(66,390개, 12.2%), 전기장비(32,297개, 5.9%), 기타제품(30,879개, 5.7%), 의복· 액세서리(30,517개, 5.6%) 등으로 분포하고 있음.

12) 섬유패션산업의 하나인 염색·가공업이나, 그 외 신발 제조업 등이 있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유사 입법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u>섬유패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u>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C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원단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제품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자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패션봉제산업의 소공인이 기존 소공인 정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봉제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집적지 특화 정책 등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는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제정안은 기존 소공인 정책을 구조적 위기에 처한 봉제 산업의 특성에 맞게 체계화하고 보완하는 성격이므로 별도 법률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별 산업 및 업종을 지원한 사례로는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2019. 6. 26.)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개별 산업·업종 지원 법률 사례

법률명	정책대상 산업	소관부처	제정일	주요 내용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인쇄 산업	문화체육관광부	2007.7.19.	인쇄산업 진흥계획,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시설 지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공예 산업	문화체육관광부	2015.5.18.	공예산업 육성, 공예인 지원, 공예문화 확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문화체육관광부	2006.4.28	게임 산업 육성, 기술개발, 인력 양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기반 산업	산업통상부	2011.7.25	제조 기반 산업 육성, 기술개발 지원

둘째, 패션봉제산업이 섬유·패션산업 밸류체인의 핵심 공정이라는 점에서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 정책과의 역할 구분 및 지원 체계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패션봉제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며, 우수 기술의 보급 및 전수, 공동사업 및 판로 확대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패션봉제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통상부와 그 소관기관 직제」[13]상 섬유·패션 관련 제품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시행은 산업통상부 소관이므로, 섬유·패션산업의 일부인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패션봉제산업에 속하는 사업체 대다수가 영세 소공인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에 정책 및 업무 분장의 조정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섬유패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은 정부조직법 및 직제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고유 직무에 해당하고, 패션봉제산업은 「원사-원단-염색·가공-디자인-봉제-유통-수출」로 이뤄지는 섬유패션산업 밸류체인의 핵심 공정이므로 이를 중소·소상공인 정책의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담당하기보다는 해당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섬유패션정책 체계하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바,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산업통상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패션봉제산업이 섬유·패션 산업 가치사슬의 한 공정으로 산업통상부 정책과도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으나, ① 패션봉제산업 사업체의 81.3%가 5인 미만 영세 소공인으로 형성되어

13)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산업성장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5. 섬유・패션・가죽 관련 제품, 탄소・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6. 섬유・패션・가죽 관련 제품, 탄소・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7.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있어 영세 제조업을 보호하고 이들의 자생력 회복을 지원하는 등의 소공인 정책 성격이 강한 분야[14]이며, ②봉제업은 숙련 인력의 고령화와 집적지 쇠퇴 등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이전에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관리[15]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설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셋째, 법체계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해 해당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패션봉제산업에 속한 도시형소공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체계 내에서 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제정안은 패션봉제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의 중복이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패션봉제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4) 중소벤처기업부는 본 제정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은 영세 소공인이므로, 소공인에 대한 종합 지원 정책(집적지 활성화, 스마트 공방, 판로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것이 정책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15)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부가 섬유패션 전반 기술고도화와 수출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둔다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붕괴 위기에 처한 봉제 소공인의 생태계 안정과 자생력 회복에 중점을 두어 상호 보완적 관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2) 제정안의 개관

동 제정안은 총 4장 16개 조문 및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2장은 패션봉제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정보 제공 및 현황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제3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인력 양성, 기술 전수, 창업, 시설·유통의 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확대,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4장 보칙은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 제도 운영 관련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u>제정안 주요 내용</u>

장	조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장	조	조 제목
패션봉제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제7조	패션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장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지원	제8조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9조	기술의 전수 지원
	제10조	창업 지원
	제11조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12조	공동사업 지원
	제13조	판로 확대 지원
	제14조	금융 및 세제지원
제4장 보칙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시행일

2. 주요 조문별 검토

(1) 법률의 목적 및 정의 규정 등(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패션봉제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패션봉제”란 소프트웨어ㆍ기계ㆍ장비 또는 수작업으로 도안ㆍ재단ㆍ봉제하여 의류, 양말,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패션봉제산업”이란 제1호의 활동과 관련된 제품의 기획ㆍ제조ㆍ유

통·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활동을 말한다.

3. “패션봉제사업자”란 패션봉제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패션봉제사업체”란 패션봉제산업에 속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패션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1조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패션봉제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발전 기반 마련을 통해 구조적 위기에 처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안 제2조는 “패션봉제”, “패션봉제산업”, “패션봉제사업자”, “패션봉제사업체”에 대한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패션봉제산업은 원단·생산·유통 등 다양한 가치사슬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법령상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여 정책 대상의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조제1호에서 “패션봉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중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등 제조업[1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패션봉제 정의 내용 중 하나인 ‘생활용품’의 경우 그 소재와 용도,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의 업종 및 물품[17]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는바, 향후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2조제2호에서 “패션봉제산업”이란 ‘제1호의 활동과 관련된 제품’의 기획·제조·유통·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 조항의 명확성을 위해 ‘제1호의 활동과 관련된 제품’을 ‘패션봉제 제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활동’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집행 단계에서 해석상 혼란 및 적용 범위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수적인 서비스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18]을 검토할 필요

16) 한국표준산업분류 C제조업(대분류) 중 C14.의복, 의복 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중분류)

17) 예를 들어 수건,앞치마,침구류,커튼 등 생활용 섬유잡화는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에, 가방 및 신발은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 봉제인형, 완구 등 일부 봉제 생활잡화는 ‘C33 기타 제품 제조업’에 포함됨.

18) [참고 조문]

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3조에서 국가는 패션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패션봉제산업은 지역 집적지 중심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도시형 제조업으로, 중앙 정부의 정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바,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안 제4조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률을 다른 관련 법률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됨. 우선적 적용과 보충적 적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법률의 성격에 따르는데, 해당 법률이 특별법적인 성격을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패션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양말,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패션봉제산업"이란 패션봉제 제품의 기획·제조·판매·정보·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속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
3. "패션봉제업체"란 패션봉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상대적이고 사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으므로, 사항에 따라서 우선적 적용과 보충적 적용을 혼용할 수도 있음.

따라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①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 ②해당 법률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③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일부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됨.[19]

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②해당 법률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션봉제산업 육성·지원'에 관련된 사항들은 현행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률에서도 유사하게 규정[20]하고 있으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21]에 따르면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원 사항 등이

19)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5., pp.228~259

20) 제정안의 전문인력 양성, 기술의 전수, 시설·유통의 현대화, 공동사업 등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제8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13조 기술의 전수 지원, 19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20조 공동사업 지원 등 유사 지원 규정들이 있음.

2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중복될 경우 제정안이 아닌 현행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제정안이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현행 관련 법률보다 구체화·명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작성 및 패션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 정 안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패션봉제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패션봉제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패션봉제산업 기술의 전수에 관한 사항 5. 패션봉제사업자 간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패션봉제사업장의 환경개선 및 공동작업장 구축 7.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현대화 및 스마트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패션봉제산업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9. 패션봉제산업의 집적지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패션봉제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패션봉제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패션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패션봉제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패션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패션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패션봉제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패션봉제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영세·비정형 구조로 인해 부족했던 패션봉제산업의 기초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향후 동 산업의 전략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22]에 따라 도시형

2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기술혁신·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기본법」[23]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에서 한국패션협회와 함께 '의류 제조업 실태조사'[24]도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정책 계획 및 조사 체계와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3)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4) 통계청 고시 제 2025-695호, 2025. 9. 11.
1. 통계의 명칭 : 의류제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0호 [2009.09.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22.

안 제7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패션봉제산업 관련 정보 제공과 현황 관리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패션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패션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패션봉제산업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25]에서도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바,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지원(인력·기술·창업·시설·판로·금융 및 세제 지원) (안 제8조~제14조)

제 정 안
제8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패션봉제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5)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그 취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의 전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 기술 전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패션봉제산업 관련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패션봉제산업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창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관련 교육·상담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 지원에 관한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사업체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의 지원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동사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사업자가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

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2. 공동작업장·공용재단실 등 공동생산시설의 설치·운영
3. 구매·물류·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구축
4.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및 홍보
5.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6. 원단폐기물 공동 처리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사업

제13조(판로 확대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온라인 유통플랫폼 연계 및 공공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판로 확대 사업의 지원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금융 및 세제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패션봉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의 전수, 창업,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공동사업, 판로확대,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제정안의 지원 사업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기존 사업과 유사하여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지원사업	현행 사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기술의 전수 지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의 전수 지원
창업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
시설·유통의 현대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공동사업 지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판로 확대 지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세의 감면

한편, 안 제8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패

션봉제산업과 관련된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6]이 있음.

또한 안 제8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의 지정 제도는 인력 양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영업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아님. 따라서 안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 국고 지원을 배제할 필요는 있겠으나, 대학의 교육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등을 포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27]를 참고하여 지정을 취소하

2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그 밖에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12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패션봉제사업자가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각 호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화·공동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등은 거래 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거래 비용이라기보다는 사업 운영 전반의 비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유사 입법례[28]를 참고하여 '경영비용'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세제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근거 규정을 둘 실익이 없으며, 개별법에서 세제 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29]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9) 「조세특례제한법」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25.(생략)

의견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패션봉제산업은 숙련기술, 집적지, 분업 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도시형 제조업으로 개별 사업체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기술·생산·유통을 포괄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원규정 대부분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며,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정비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단계적·선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임.

(4) **보칙**(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 정 안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안 제15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동 제정안에 따른 권한의 일부

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의 내용이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 입법례[30]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 제목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6조는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공무원 의제조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5

3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소공인 현황

1. 소공인 정의 및 현황

□ **(정의)** 소공인은 「소공인법 」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①「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②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현황)** '23년 **소공인**은 **54.5만**개로, **전체 제조업**(61.6만개)의 **88.5%**, **종사자**(123.3만명)는 **24.5%**, **매출**(219.5조원)은 **8.6%**를 **차지**

구 분	도시형 소공인(25개 업종)		전체 제조업	※ 참고	
		제조업 대비 비중		소상공인 (전체 대비 비중)	전체 산업
기업체(개)	545,963	88.5%	616,664 (7.4%)	7,906,861 (95.2%)	8,309,696
종사자(명)	1,233,705	24.5%	5,030,155 (21.2%)	10,899,947 (45.9%)	23,767,377
매출액(억원)	2,195,331	8.6%	25,540,899 (34.7%)	12,776,045 (17.4%)	73,591,237

* 출처 : 중소기업기본통계(2022년 기준)

□ **(5인 미만 소공인 현황)** 전체 소공인(54.5만개) 중, 5인 미만 소공인은 기업체수 47만 5천개(86.9%), 종사자수 74만 9천명(60.7%), 매출액 116조원(52.9%)을 차지

(단위 : 개, 명, 억원, %)

C.제조업	전체		소계		5인 미만		5인 이상~9인 미만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기업체	545,963	100	539,694	98.9	474,668	86.9	65,026	11.9
종사자수	1,233,705	100	1,171,015	94.9	748,783	60.7	422,232	34.2
매출액	2,195,331	100	2,061,242	93.9	1,162,247	52.9	898,995	41.0

* 자료 : 2023년 중소기업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

□ **(업종별)** 소공인 업종은 **금속가공**(83,942개, 14..9%), **식료품**(70,061개, 12.5%), **기타기계장비**(67,507개, 12.0%), **기타제품**(32,329개, 5.7%), **전기장비**(32,287개, 5.7%), **의복· 액세서리**(31,830개, 5.7%) 등에 분포

□ **(지역별) 전체 소공인**의 절반이 **수도권**(28만개, 51.2%)에 **분포**하고 있으며, **부울경**(9만개, 14.1%), **대구경북(6.6만개, 12.0%) 등에 주로 위치**

* 광역별 소공인 분포 : 경기(17.3만개, 31.6%), 서울(7.6만개, 13.9%), 경남(4.6만개, 8.4%), 경북(3.5만개, 6.4%), 부산(3.5만개, 6.4%)등 順

□ **(수출 현황) '24년 소공인 수출기업수는 17,470개사, 수출액은 42.4억달러**로, 전체 수출기업(99,132개사)의 **17.6%**, 전체 수출액(683.6억달러)의 **0.6% 차지**

* 최근 5년간 소공인 수출 : ('20) 1.8만개사/36.5억달러 → ('21) 1.7만개사/43.2억달러 → ('22) 1.7만개사/ 42억달러 → ('23) 1.7만개사/38.5억달러 → ('24) 1.7만개사/42.4억달러

(단위 : 개사, 백만달러, %)

구분	수출기업		수출액	
		비중		비중
전체	99,132	100	683,609	100
제조업	39,434	39.8	580,659	84.9
소공인	17,470	17.6	4,237	0.6

○ **(업종별)**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3,548개, 20.3%), 전자부품·컴퓨터 및 통신장비 제조업(1,652개, 9.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1,457개, 8.3%) 順

○ **(교역국)** 기업수 기준 중국(4,546개, 26%), 미국(3,867개, 22.1%), 베트남(3,363, 19.3%) 順, 수출액 기준 중국(789백만달러, 18.6%), 미국(722백만달러, 17.0%), 베트남(563백만달러, 13.3%) 順

2. 소공인 집적지 및 집적지구 현황

□ **(개념)** 소공인은 집적화 경향*이 있으며, "**소공인 집적지****"는 **자연 발생** 지역을, "**소공인 집적지구"는 법적 지정** 지역을 의미

* 소공인은 공동구매, 협력생산 등 이점에 따라 집적 경향이 있으며 집적지 內 소공인들이 집적지 外 보다 평균 매출(+1.4억원), 고용(+0.48명)이 더 높음

** 집적지(구) 기준: 동일업종 소공인이 행정구역(읍·면·동) 내에 50개(특별·광역시), 40개(시), 20개(군) 이상 지역

○ **(집적지)** 전국에 **2,388개*** **소공인 집적지**가 분포

* '23년 기업통계등록부(전체기업 모집단)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자체 분석(추정)

○ **(집적지구)「소공인법」제15조**에 따라 **중기부**가 **56곳** 지정('25.11월 기준)

* 지정절차 : (신청) 자자체에서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 등 수립 후 신청 → (심의·의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지정·고시) 중기부 지정 및 고시 → (지원) 인프라 시설 구축비 등 지원

< 지역별 소공인 집적지 및 집적지구 현황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집적지	2,388	221	104	96	107	31	29	28	2
(비중)	(100%)	(9.3%)	(4.4%)	(4.0%)	(4.5%)	(1.3%)	(1.2%)	(1.2%)	(0.1%)
집적지구	56	15	2	3	2	2	2	-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집적지	842	44	115	118	60	106	226	243	11
(비중)	(35.3%)	(1.8%)	(4.8%)	(4.9%)	(2.5%)	(4.4%)	(9.5%)	(10.2%)	(0.5%)
집적지구	14	4	1	3	3	1	2	2	-

2	패션·봉제업종(C14) 소공인 현황(중소기업기본통계 기준)

1. 패션 · 봉제업종 소공인 현황

□ **(현황)** 전체 소공인(54.5만개) 중 **패션·봉제업(C14) 소공인은 3만개사로, 전체 소공인(54.5만개)의 5.6%, 종사자수는 5.6만명(4.5%), 매출액은 8.5조원(3.9%)**을 차지

(단위 : 개, 명, 억원, %)

구분	업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중
기업체	C.제조업	510,401	519,083	551,049	562,672	545,963	100.0
	의류봉제(C14)	28,332	29,599	31,408	31,830	30,517	5.6
종사자수	C.제조업	1,272,792	1,258,020	1,283,380	1,284,042	1,233,705	100.0
	의류봉제(C14)	61,467	60,730	60,390	59,727	56,067	4.5
매출액	C.제조업	1,935,536	1,825,444	2,089,853	2,267,053	2,195,331	100.0
	의류봉제(C14)	82,265	69,854	79,857	90,552	85,434	3.9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을 통칭하는 산업

**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

□ **(5인 미만 소공인 현황)** 패션·봉제업(C14) 소공인(3만개) 중, 5인 미만 소공인은 기업체수 **2.84만개(93.19%), 종사자수 4.2만명(75.2%), 매출액 5.4조원(63.4%)**을 차지

(단위 : 개, 명, 억원, %)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전체		5인 미만	
		비중		비중
기업체	30,517	100	28,417	93.1
종사자수	56,067	100	42,180	75.2
매출액	85,434	100	54,199	63.4

* C14 기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수치와 5인 미만 C.제조업 기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수치 산출(2023년 중소기업기본통계 가공)

○ **(평균 종사자수) : 1.8명 / (평균 매출액) : 2.8억원**

(단위 : 억원)

구분1	구분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종사자수	C.제조업	2.5	2.4	2.3	2.3	2.3
	의류봉제(C14)	2.2	2.1	1.9	1.9	1.8
평균 매출액	C.제조업	3.8	3.5	3.8	4.0	4.0
	의류봉제(C14)	2.9	2.4	2.5	2.8	2.8

*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별)** 의복제조업종(C14) 소공인의 **80.2%가 수도권(2.45만개)에 분포, 부울경(0.24만개, 7.9%), 대구경북(0.18만개, 5.8%) 등**에 주로 위치

* 광역별 의복제조업 소공인 분포 : 서울(1.9만개, 62.3%), 경기(0.48만개, 15.7%), 부산(0.18만개, 5.8%), 대구(0.14만개, 4.5%), 인천(0.07만개, 2.3%) 등 順

○ **(집적지)** 의복제조업(C14) **소공인 집적지는 행정동 기준 129개**로 전체 의복제조 소공인의 **66.1%(2.1만개사)가 밀집, 대표 집적지는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 중랑구 면목 제2동**

* C14의 대표 집적지 : 서울 중구 신당동(1,260 社), 서울 중랑구 면목 제2동(972 社), 서울 동대문구 장안제1동(743 社), 서울 금천구 독산제1동(696 社), 서울 종로구 창신 제1동(610 社), 서울 강북구 삼양동(607 社) 順

□ (수출현황) '24년 의복제조(C14) 소공인 수출기업수는 1,031개사, 수출액은 42억달러로, 수출소공인(1.7만개사)의 5.9%, 소공인 수출액(42억달러)의 4.8%

(단위: 개 사, 백만달러, %)

구분	수출기업		수출액	
		비중		비중
전체	99,132	100	683,609	100
제조업	39,434	39.8	580,659	84.9
소공인	17,470	17.6	4,237	0.6
C14. 의복제조 소공인	1,031	1.04	204	0.03

3	의류제조업 현황(2025년 의류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1. 봉제산업(의류 제조업, C14) 관련 현황

□ 25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사업체수 23,507개(국내 제조업체의 4.4%), 5인 미만 사업체가 81.3%,** 서울 소재 업체 비중이 64.5% 차지

* 통계청의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기준으로 의류제조업(C14) 사업체(한복제조업 제외) 표본조사(2,057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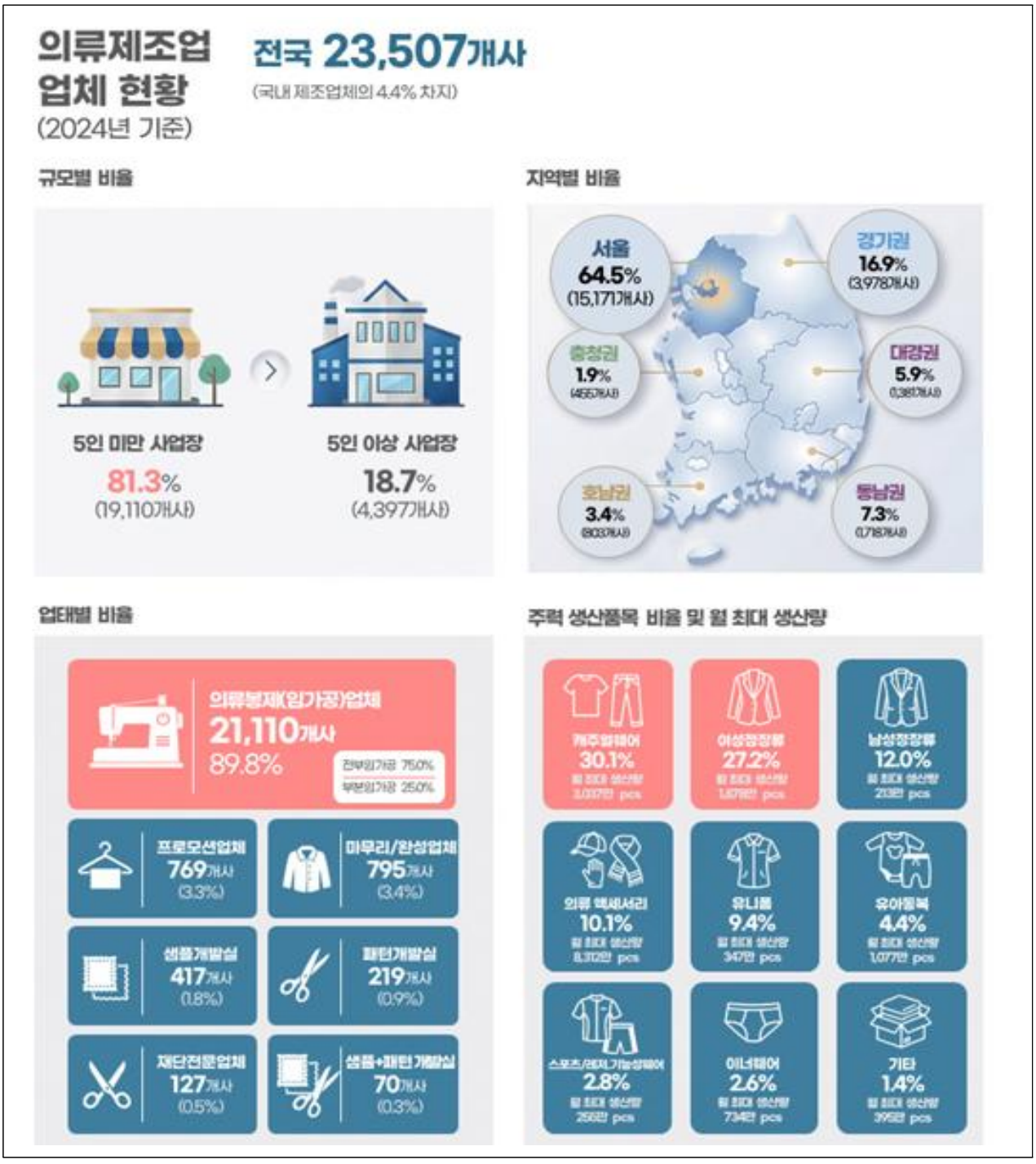

매출 현황
(2024년 기준)

거래처별 매출 비율

총 거래처 수 및 거래처 매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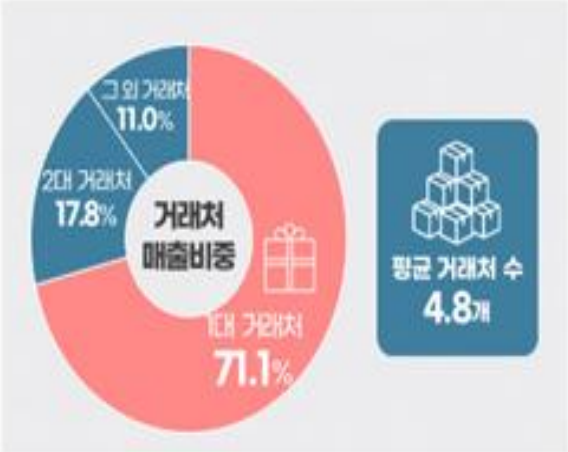

2024년 매출액 구간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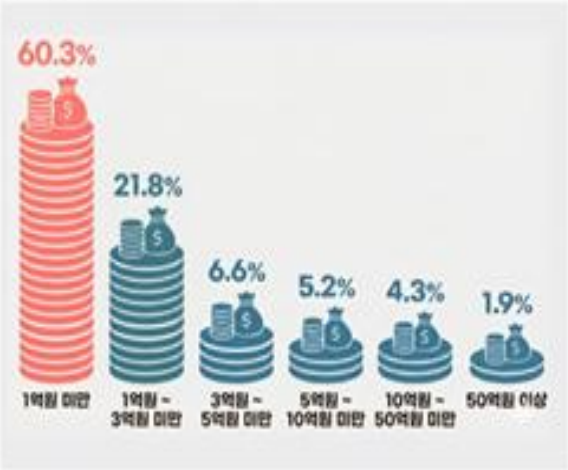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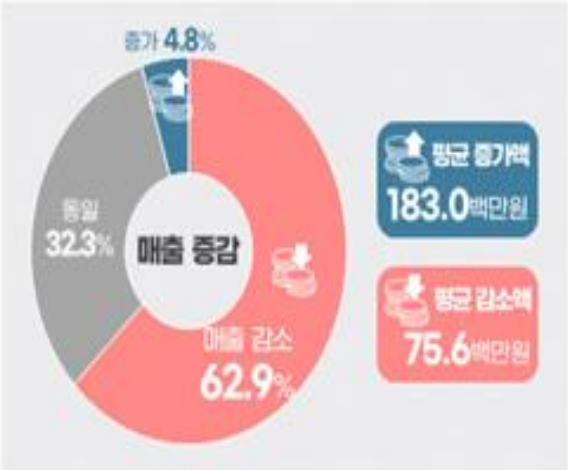

2024년 기준 영업 이익률(평균)

향후 2년간 사업장 운영 계획

인력현황
(2024년 기준)

전체 89,337명
(국내 제조업체의 2.1% 차지)

지역별 종사자 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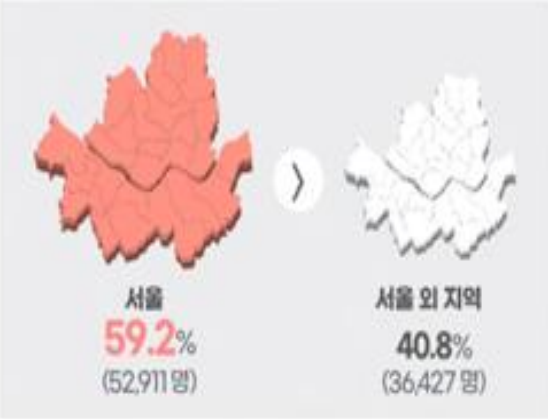

성별 종사자 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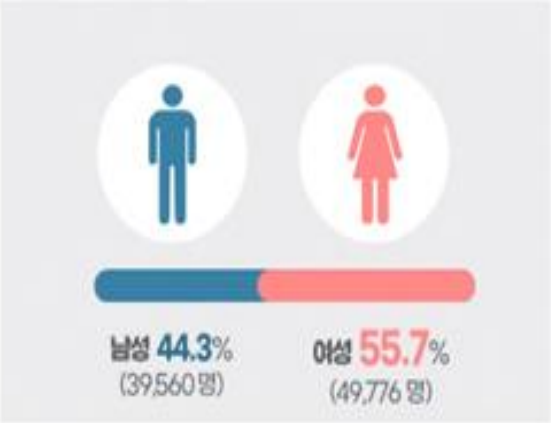

4대 보험 가입여부별 종사자 수 비율

연령별 종사자 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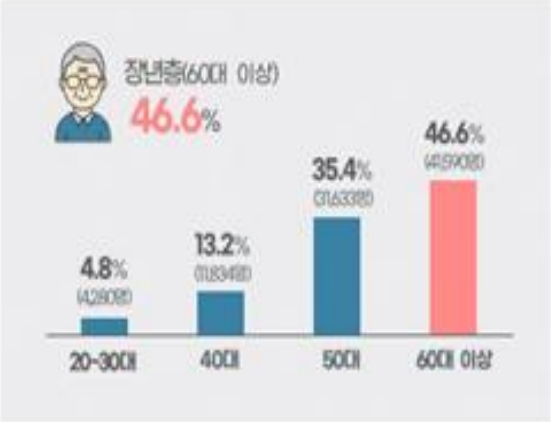

직종별 종사자 수

직종별 종사자 월 급여 (평균)

4	패션·봉제산업 위기 관련 통계 * 출처 : 2025년 의류제조업 실태조사(한국패션협회, 산업부) 한국패션산업 빅데이터 트랜드 2024(산업연구원 트랜드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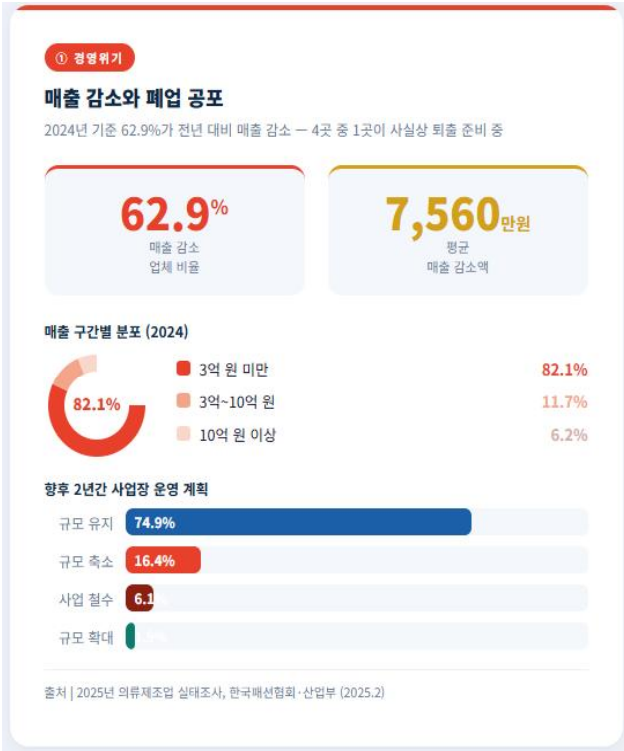

④ 산업쇠퇴

섬유산업 장기 구조적 하락 — 10년간의 역전

성장률 +2.7% → −3.8% 역전 / 수출 2023년 11.3% 급감 / 세계 시장점유율 10년 새 반토막

2004–2013 → 2013–2023	2023년 수출	2016년~현재	2010 → 2023
−3.8%	**−11.3%**	**−$79.6억**	**2.1→1.0%**
산업 성장률 (이전 +2.7%에서 역전)	전년 대비 수출 급감 (2024 1~7월도 −4.1%)	섬유 무역수지 적자 (2023년 기준)	세계 섬유시장 점유율 반토막

섬유·의류 수출 추이 (억 달러, 개략)

감소 전 급감 구간

출처 | KIET 산업연구원 국내 섬유산업 동향 분석 (2024)

⑤ K패션 역설

패션 소비 역대 최대 — 그러나 제조 기반은 붕괴 직전

한국 패션시장 규모 48.4조 원 사상 최대, 동시에 국내 봉제 제조 기반 소멸 가속 — 구조적 모순

48.4조 원
2023년 한국 패션시장 규모
역대 최대 — 2024~25년도 플러스 성장 지속

↔

23,507개사
의류제조 사업체 수 — 5인 미만 **81.3%**
23.0%가 향후 2년 내 폐업·축소 계획

K-패션 수요 급증
K-콘텐츠 확산으로 K-패션 글로벌 수요 증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봉제 인프라 의존도 **90%↑**

≠

국내 생산능력 ↓
대형 브랜드는 베트남·중국 외주화 가속
국내 봉제 기반 없이는 **K-패션 실현 불가**

입법 시의성: 패션 소비 호황이 국내 봉제 제조업을 살리지 못하는 구조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패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 진작책이 아닌, **제조 기반 보존을 위한 특별법적 안전망**이 시급합니다. 특히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90% 이상이 국내 봉제 인프라에 의존하는 만큼, 봉제 집적지 붕괴 시 K-패션 산업 전체의 공급 기반이 위협받습니다.

출처 | 트랜드리서치 「한국패션산업 빅데이터 트랜드 2024」 · 2025년 의류제조업 실태조사 (한국패션협회·산업부)

5	중소벤처기업부 패션·봉제업종 소공인 지원 현황

1. 패션 · 봉제업종 지원사업 및 예산 현황

□ **(법적근거)** 「도시형소공인법」에 근거하여 생활제조업 기반의 **소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지원

□ **(지원내용)** 소공인 특화지원사업('26년 총 1,352억원)을 통해 **스마트공방, 인력 양성, 판로지원, 집적지 인프라 확충 등 소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

○ 이 중 **패션·봉제업종 관련 소공인 지원규모**는 '25년 기준 **약 56.5억원** (전체의 약 5%) **수준**이며, **스마트공방·판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추세**

< 최근 3년간('23~25) 소공인특화지원 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명	'23년	'24년	'25년	합계
제조업 전체 (C10 ~ C34)	소공인지원센터	16,620	15,620	15,620	47,860
	스마트공방	73,500	88,200	88,200	249,900
	클린제조환경조성	8,400	8,400	8,400	25,200
	판로개척지원	7,650	7,650	7,650	22,950
	소계	106,170	119,870	119,870	345,910
의복 제조 업종 관련 (C14)	소공인지원센터	1,870	1,870	1,650	5,390
	스마트공방	2,051	3,193	3,514	8,758
	클린제조환경조성	128	227	104	459
	판로개척지원	275	180	378	833
	소계	4,324	5,470	5,646	15,440
비중	-	4.07	4.56	4.71	4.46

2. 패션 · 봉제업종 인프라 지원 현황

□ 집적지(구)내 소공인 대상으로 소공인지원센터*(특화지원센터 37곳, 복합지원센터 13곳, 공동기반시설 39곳) 설치·운영 중

* 「소공인법」을 통해서는 의복제조(C14)을 포함하여 25개 제조업 전반을 지원

○ **의복**(C14)을 대상으로 하는 **소공인지원인프라는 16곳** 운영

No	센터유형	센터명	주요업종	인프라 현황
1	특화지원센터*	서울 광진의류제조센터	C14(의복)	①CAD CAM 실습교육, ②시제품 제작, ③기술개선 컨설팅, ④패션업 전시회 참가지원 등 집적지 특성에 맞는 자율사업 추진
2		서울 장위의류봉제센터	C14(의복)	
3		부산 범일의류제조센터	C14(의복)	
4		부산 서동의류제조센터	C14(의복)	
5		대구 대봉의류봉제센터	C14(의복)	
6	복합지원센터**	서울 광진구복합지원센터	C13(섬유제품), C14(의복)	공동작업실, 교육실, 개발실, 전시실, 스튜디오 등
7		서울 동대문구복합지원센터	C14(의복)	재단실, CAD실, 샘플실, 공동작업장 등
8		서울 종로구복합지원센터	C14(의복)	재단실, 공동작업실, CAD실, 개발실 등
9		서울 중랑구복합지원센터	C14(의복)	공용장비실, 재단실, 디자이너실 등
10	공동기반시설**	서울 성북구공동기반시설	C14(의복)	공동작업장, 판매장 등
11		부산 범일동공동기반시설	C14(의복)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판매장 등
12		대구 중구공동기반시설	C14(의복)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등
13		부삼 금정구공동기반시설	C14(의복)	공동장비실, 교육장, 창고 등
14		서울 도봉구공동기반시설	C14(의복)	공동장비실, 스튜디오실, 전시판매장 등
15		서울 관악구공동기반시설	C14(의복)	공동장비실, 샘플실, 교육장 등
16		서울 창신동공동기반시설	C14(의복)	재단실, CAD실, 공동작업장 등

* (특화지원센터) 집적지내 소공인 대상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 (복합지원센터, 공동기반시설) 집적지(구)내 소공인 대상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공동생산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6	중소벤처기업부 '26년 소공인 지원 계획

<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5년 예산	26년 예산	증감
소공인 특화지원	지역소공 인육성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3,300	12,680	△620
		소공인복합지원센터	2,320	4,887	+2,567
		소공인실태조사	-	400	+400
	판로개척지원		7,650	6,694	△956
	클린제조환경조성		8,400	12,600	+4,200
	스마트제조지원		88,200	98,000	+9,800
소계			119,870	135,261	+15,391

❶ 스마트공방 확대 등 제조혁신 추진

○ **(스마트공방 확대)** 소공인의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에 기초단계의 스마트장비 보급을 통해 **스마트공방** 육성('26년 980억원)

○ **(선도공방 지정)** 집적지內 동종 업종의 소공인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스마트 선도공방'을 지정**(연 20개사 내외)하여 스마트화 확산

❷ 기술인력 양성 및 안전한 일터 조성

○ **(기술인력 양성)** 제조명인(백년소공인 등)을 전문강사로 활용한 **도제식 교육*을 시범 운영**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을 양성·보급**

○ **(안전일터 조성)** 노후 작업장에 대해 화재, 전기·가스시설 등 위험요인을 사전 진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26년 126억원)

❸ 백년소공인 인증 지원 및 판로 개척

○ **(백년소공인 지정 확대)** 내년 **백년소공인 지정을 확대**하고,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기술전수·가업승계** 등 연계 지원을 강화

○ **(사업화·판로 지원)** 성장성 있는 제품을 보유한 **우수 소공인을 발굴**하여, **수출교육, 제품 고도화** 등을 통한 **해외 판로 촉진**('26년 67억원)

❹ 집적지 인프라 확충

○ **(지원센터 확충)** 소공인 현장과의 접점에 **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를 확대** ('26년 179.7억원)하고, 집적지 특성에 맞는 자율사업 및 인프라 연계 지원

○ **(상생)** '패션메이커허브 코워킹스페이스' 운영(서울 창신동) 등을 통해 의류제조 소공인의 원활한 창업, 초기정착을 위한 '공간-네트워킹' 지원

- **패션 대기업**(이랜드 등) **현직 MD의 제품 품평회를 실시**하여 제품별 상품성 및 판로개척 가능성 진단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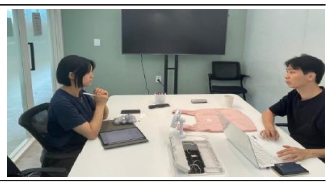
품평회	단독 기획전	전문가 교육	전문가 멘토링

< 참고 : 패션·봉제업종 집적지 지원 우수사례 >

특화지원센터	**(서울광진의류)** SM엔터테이먼트 굿즈(패션의류) 제조, ㈜○○신화 · 공동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의류 현장 판매(3.8백만원), SM엔터테이먼트와의 거래액(141백만원) 달성 · (매출액) '23년도 8.9억 원 → '24년도 9.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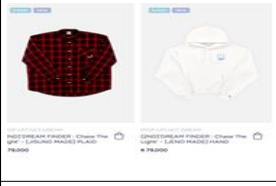
	(장위의류봉제) 시제품개발을 통한 협업판매 지원, 태○사 · 기술전수 패턴컨설팅을 통해 고난이도 패턴기술 습득 및 자체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일감 연계 지원 · 거래처에 의존하는 OEM방식에서 자체 브랜드 개발하여, 810백만원 매출액 달성	
	(서울광진의류제조) 홍보마케팅 지원, 지○○이 · 패션 플랫폼 '무신사' 온라인 광고, 신제품 룩북 촬영 지원 · 브랜드 인지도 및 입지강화(무스탕/퍼 카테고리 3위 랭킹) * 무신사 내 관심 브랜드 설정 수 6.4만 달성	
	(부산범일의류) 기술전수지원사업 통한 창업자 배출 · 기술전수자, 의류제조기술자 대상 기술전수지원사업('23~'25) · 의류제조 신규창업자 3명 배출 · '1:1 심화교육을 통해 '의류제조기술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연구' 등 학술지 게재하여 지식 자산화 추진	
복합지원센터	**(서울 종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24. 구축) - **(공동시설)** 재단실, CAD실, 교육장, 공동작업실, 제품개발실 - **(공동장비)** 재동 재단기, 자동 연단기, 패턴 CAD, 패턴입력기, 플로터, 본봉, 오버로크, 웰팅기 등 봉제장비, 바큠보드 등	

7	산업통상부 의류제조업(봉제업종) 지원사업 내용

□ 의류제조업(봉제산업) 지원사업 내용

	과제명	사업내용
1	의류제조 혁신기반 조성	○ (제조공급망 안정화) 패션큐브*와 자동재단실 운영을 통해 국내 고부가 의류 제조공급망 안정화 및 제조 자동화 지원 * (Fashion Cube) 패션기업의 원활한 시제품 개발과 국내 생산 지원을 목표로 '24. 9.에 구축된 공간으로 샘플/패턴 개발·상담실, 디자인 리뷰룸, 촬영스튜디오 등으로 구성 ○ (의류제조 혁신) 의류제조 혁신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의류제조 혁신포럼' 개최, 국내 의류제조업 실태조사* 수행 * 국가승인통계(115030)로 국내 의류제조업 현황 및 지원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의류제조 일감연계	의류 신속생산	의류제조 혁신	국가승인통계
개발상담, 생산매칭	자동재단 작업지원	의류제조 혁신포럼	의류제조업 실태조사

	과제명	사업내용
2	섬유패션 수요기업 인력양성	○ (일자리 기반구축) 미취업자 대상, 채용 희망 수요기업 맞춤형 실무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취업 연계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기업수요 발굴 → 맞춤교육 개발 → 교육생 선발 및 운영 → 채용연계 → 사후관리 ○ (교육프로그램 운영) 섬유패션기업의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친환경 산업 수요 전문인력 양성 * 산업 수요기반 미래선도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3D 가상디자인, AI/디지털 활용 기획·마케팅, 온디맨드 의류제조, 친환경 섬유소재 제조 분야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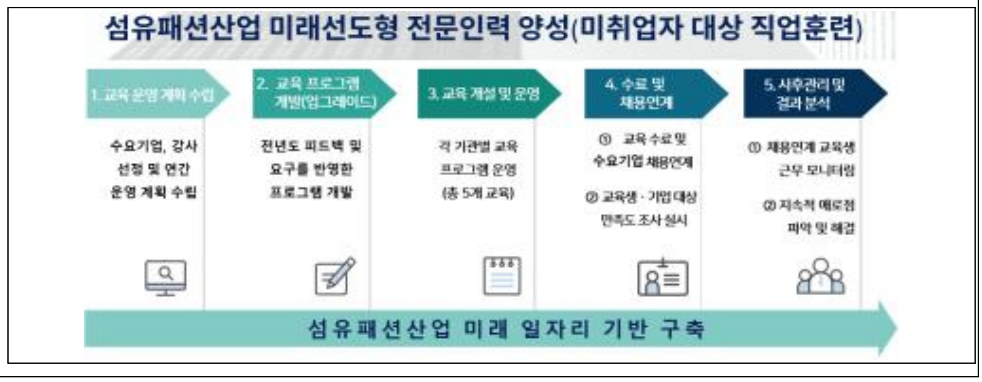

	과제명	사업내용
3	섬유패션 수요-제조간 AI 활용 디지털 공급망 구축	○ (AI/DX 도입) 제조(봉제)분야 AI/DX기술 도입을 위한 제조 핵심문서 디지털화, DX기반 생산 모니터링, 숙련 기술 데이터 확보 ○ (디지털 공급망) AI활용 수요-제조간 매칭, 생산 모니터링 디지털 공유, 역량 강화 등 통합 솔루션 지원을 통한 국내 제조 활성화

	과제명	사업내용
4	K-섬유패션 협력강화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	○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 유망 브랜드의 발굴부터 창업 지원, 글로벌 진출, K-프리미엄 가치 제고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 * 초창기-성장기-성숙기-확장기 등 성장 단계별 시제품 제작지원, 홍보·마케팅·세일즈 지원으로 2026년도 280개사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내외 매출 300억원 달성 목표 ○ (All in Korea 섬유패션 스트림 협력강화) K디자인-K소재-K제조로 완성한 All in Korea K-섬유패션 프리미엄 제품·굿즈의 경쟁력 및 인지도 제고 * 국내 소재·제조 사용 전환 3% 증가로 국산 섬유패션 제품 생산액 증가 및 K패션 의류 수출 확대

All in Korea [100% 국내산 제품·굿즈]	글로벌 브랜드 육성		
	유망 브랜드 발굴 [K-Fashion Awards]	사업화 지원 [국내 수주 전시회]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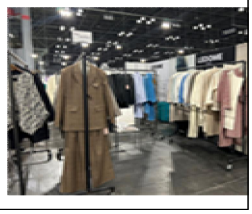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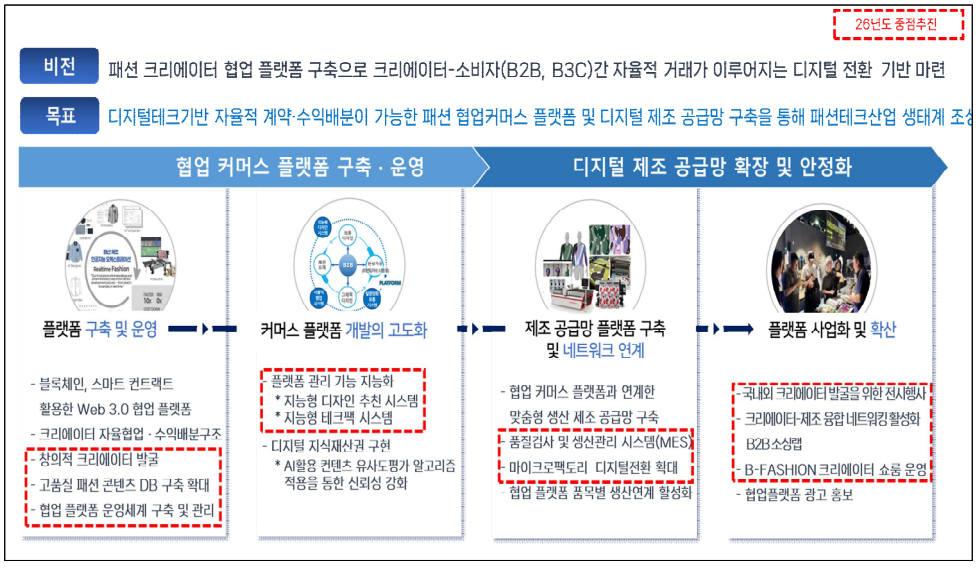
	과제명	사업내용
5	패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구축	○ (협업 플랫폼 구축) 자율계약 및 수익분배가 가능한 Web 3.0 기반의 패션 크리에이터 협업 커머스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 고품질의 패션 콘텐츠 개발, AI 활용 패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의 지능화 ○ (공급망 확장) 협업 플랫폼과 연계한 디지털 제조 공급망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조공정 간 자율적 협업 생태계 확대